



환경부



수신 서울특별시(자원순환과장)

(경유)

제목 2018년 「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」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(3차)

1.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-2974('18.2.22)호와 관련입니다.
2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'2018년도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(재활용 동네마당)'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붙임과 같이 통지합니다.
3. 보조사업자는 예산의 조기집행 및 교부조건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,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보조사업 집행실적(정산)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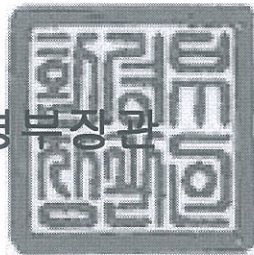
<2018년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국고 교부내역>

(단위: 천원)

시?도	보조사업자	2018년 국비	요청액	교 부 액		국 고 보조율
				기 교부액	금회 교부액	
서울	강서구청장	35,000	35,000	25,000	10,000	50%

붙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. 끝.

환경부장관



주무관

유영란

환경사무관

김지수

과장

전결 09/05
권병철

협조자

시행 폐자원관리과-5235 (2018.09.05.) 접수 자원순환과-14352 (2018.9.6.)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(어진동) 환경부,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/ <http://me.go.kr>
전화 044-201-7370 / 전송 044-201-7376 / yyoung@me.go.kr / 대시민공개

(붙임)

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

[강 서 구]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 통지합니다.

보조사업명 :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

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

(단위: 천원)

시·도	보조사업자	2018년 국비	요청액	교 부 액		국 고 보조율
				기교부액	금회 교부액	
서울	강서구청장	35,000	35,000	25,000	10,000	50%

예산과목 : 072-1500-1538-377-330-03

교부조건

- 가. 보조금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, 국고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합니다.
- 나.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.
- 다. 『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』, 『지방재정법』 등 관련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라. 『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27조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마. 지방비 확보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사항(예산서 등)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18년 9월 일

환 경 부 장 관